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7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김남근 · 권향엽 · 김승원
남인순 · 문금주 · 문대림
민병덕 · 박홍배 · 이광희
이용우 · 이재관 · 장종태
최혁진 · 황명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수표로 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특례) ①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시최고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493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증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신청에 따른 피해금 환급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최고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수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5. ----- ----- ----- -----말하며, 수표로 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3조의4(수표에 대한 공시최고</u> <u>특례) ① 피해자는 전기통신금</u> <u>용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u> <u>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민사</u> <u>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공시</u> <u>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공시최고절차에는</u> <u>「민사소송법」 제493조부터</u> <u>제49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u> <u>다.</u> <u>③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제</u> <u>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u> <u>실을 금융회사에 증명하고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
다.

④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
가 없는 한 제3항의 신청에 따
른 피해금 환급을 하여야 한다.